

2026년 제3회 영주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도 제3회 영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영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제35조 및 제62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55조 및 제62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계약기간	직무내용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주 35시간)	1명	2년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총괄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대비 및 평가업무 총괄 • 청소년문화의집 대관 및 이용자 관리 •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 지역 인프라 구축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근무실적 및 해당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자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요건

채용분야 (등급)	임용자격 요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문화의집)	1.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직무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우대조건] 1.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보유자 2. 청소년교육 관련 전공자(학사 이상) 3. 교원자격·전문 상담사·청소년 상담사·평생교육사 등 청소년교육 관련 자격 보유자 4. 운전면허 소지자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 청소년육성업무 근무경력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청소년지도 관련 근무 경력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 교사로 종사한 경력

- ※ 관련 분야 경력은 비상근경력 미인정.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사무보조·연구보조·단순노무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대체 서류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그 외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제출해야 함
- ※ 시간제 근무경력(주40시간, 단, 대학교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9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중복되는 경력은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 ※ 그 외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름

4.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직무관련 문의사항

-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054-639-6363)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639-5733)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시간	비 고
청소년지도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임용일 ~ 2년	주 35시간 ▶월, 수~금 : 09:00~17:00/14:00~21:00 ▶토·일 : 10:00~18:00	토·일 중 1일 휴무 평일 오전·오후 교대근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 (토·일·공휴일, 야간근무 등)은 부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나.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채용분야	연봉예정액	비고
청소년지도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1,098천원	(9급 상당) 연봉상한액(54,678천원) 기준 × 65% × 35/40

-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 연봉 외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공무원 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본 시험에 임용된 경우에 그 재직기간 동안 해당 연금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지원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예정안)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6년도 제3회 영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2026. 08. 20. ~ 08. 24. (3일간)	2026. 08. 28.(금) (예정)	추후 별도 공고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예정

나.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5항)
 -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영주시 홈페이지(www.yeongju.go.kr)/ 「채용모집공고」란에 공고
- 2차 시험 : 면접시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5항)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7항)
 - 영주시 홈페이지(www.yeongju.go.kr)/ 「채용모집공고」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최종 합격자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영주시 홈페이지(채용모집공고) 게시

나. 접수기간 : 2026. 08. 20.(목). ~ 08. 24.(월)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영주시 총무과 조직담당(☎054-639-6275)

라.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등기)

※ 우편접수 :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휴천동) 영주시청 총무과 조직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번호를 필히 확인 해야 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8·9(라·마)급 5,000원, 6·7(나·다)급 7,000원, 5급 이상 10,000원 (영주시 수입증지 인증)

※ 우편접수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⑨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상근여부, 주당 근무시간 명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공무원의 경우 징계사항 포함하여 발급)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불인정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로 보완해야 함**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포함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하여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⑩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수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⑪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⑫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나. 개별사항(별지 제9호 서식)

-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증빙자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성적 공개를 희망하는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영주시 총무과 인사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면접시험 성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 확인 후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위원별 평정 결과를 합산한 '상·중·하'의 개수만 공개하며, 다른 응시자의 성적, 면접위원별 개별 평정 결과 및 평정의견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임용시험의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재선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영주시 홈페이지(www.yeongju.go.kr) / 「채용모집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 054-639-6275)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명	임용분야 (임용직급)	비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학력·경력만 기재)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근무기간 필수기재) ※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8.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9.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0. 개별사항(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경력, 학위 등) ※ 해당자에 한함, 개별사항 제출시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응시원서

본인은 영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영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응시직급)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고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응시자격			
주 소	(우)		영주시 수입증지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전자우편			5급(상당) : 1만원 6·7급(상당) : 7천원 8·9급(상당) : 5천원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영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직급)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고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영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印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맞추어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자 또는 워드로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란 : 기재하지 말 것.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
(지방시간선택제임가제 나급)

③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④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영주시 수입증지 : 영주시청 새마을봉사와 또는 영주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구입·날인하되, 우편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응시원서 등과 함께 제출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5급 이상 : 1만원, 6(나)·7(다)급 : 7천원, 8(라)·9(마)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경력증명서 첨부여부
		20 . . . ~ 20 . . . (월)(주 H)			
		20 . . . ~ 20 . . . (월)(주 H)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 . . . 작 성 자 :					(인)

※ 분량은 A4용지 2~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 임용예정분야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요약서 A4 1매 별도 첨부)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영주시가 시행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
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영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영주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 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근무일수	년 월 일	상근여부 (주당근무시간)
퇴사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해당부서근무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직급(위)	특이사항
~				
~				
~				
~				
담 당 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대표이사 ○○○

직 인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어 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 수	영문성명

◎ 수상 실적

대회(명)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 상 훈

종류	등록번호	수상년월일	훈격

◎ 연구 실적

제 목	논문기여도	게재지명	발행(발표) 연월일

◎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 자격증, 경력, 학력이 응시자격요건인 경우에는 이곳에 기재하지 않으며,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합니다.